



FINANCIAL PLANNING STANDARDS BOARD

Model Rules of Conduct for CFP Professionals



FPSB 의 CFP 자격자를 위한 모범 행동규칙

FPSB 의 모범 행동규칙(Model Rules of Conduct)은 CFP 자격자에게 기대되는 행위의 수준과 유형에 대한 기준을 정한다. 이 규칙은 제 3 자에 대한 법적 책임의 근거로 설계된 것이 아니다.

이 모범 행동규칙은 윤리강령(Code of Ethics) 및 재무설계 실무기준(Financial Planning Practice Standards)을 집행하기 위한 메커니즘으로 기능한다. 행동규칙은 CFP 마크 사용 권한이 있는 모든 개인(실제로 마크를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다)에게 구속력을 가진다. CFP 자격자는 이 행동규칙을 숙지 인지하여야 하며, 자신의 활동과 관련되는 규칙을 적용 준수하여야 한다.

행동규칙 위반은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행동규칙 위반에 대한 징계는 CFP 마크를 사용할 개인의 권리에도 영향을 미친다.

FPSB International Korea 는 전문직 윤리 요건이 적절히 정의되고 포괄되도록, FPSB 모범 행동규칙의 범위와 취지를 반영한다.

CFP 자격자를 위한 행동규칙

1. CFP 자격자는 자신의 자격 또는 서비스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하여, 고객 또는 기타 당사자에게 허위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정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전달해서는 아니 된다.
2. CFP 자격자는 자신의 서비스가 제공할 수 있는 잠재적 이익에 관하여 고객 또는 기타 당사자를 오도해서는 아니 된다.
3. CFP 자격자는 고객 또는 기타 당사자를 오도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공개가 필요한 경우, 모든 관련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4. CFP 자격자는 부정직, 사기, 기망 또는 허위표시가 수반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고객 또는 기타 당사자에게 허위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진술을 고의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CFP 자격자는 (해당하는 경우) 자신이 보관·관리(수탁)할 자산, 투자재량권을 행사할 자산, 또는 감독을 행사할 자산을 고객과 명확히 식별하여야 한다.

6. CFP 자격자는 자신이 수탁하거나 재량권 하에 있는 고객의 모든 자금 또는 기타 재산을 식별하고, 그 기록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7. CFP 자격자는 법률로 허용되고, 당사자 간 서면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승인·정의되며, 각 고객의 자산을 정확히 추적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기록관리 체계를 갖춘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의 재산을 CFP 자격자 본인, 고용주 또는 다른 고객의 재산과 혼합(혼장)하여서는 아니된다.
8. CFP 자격자는 항상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한다.
9. CFP 자격자는 고객을 공정하게 대하고, 성실성과 객관성을 갖추어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10. CFP 자격자는 개인적 편견이나 이해관계가 고객에 대한 서비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1. CFP 자격자는 고객에게 적합한(suitable) 권고만을 제시하고/또는 실행하여야 한다.
12. CFP 자격자는 자신이 역량을 갖춘 영역에서만 고객에게 조언을 제공하여야 한다. 역량이 부족한 영역에서는 자문을 구하고 및/또는 고객을 자격 있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13. CFP 자격자는 자신의 전문 실무 전 영역에서 역량을 유지하여야 한다.
14. CFP 자격자는 재무설계의 발전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지속적 전문성 개발(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에 참여하여야 한다.
15. 서비스에 재무설계 또는 재무설계 프로세스의 중대한 요소가 포함되는 경우, CFP 자격자는 다음 정보를 고객에게 서면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a. 제공되는 보수(수수료) 체계에 대한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설명. 이 설명에는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정보와 CFP 자격자 및/또는 고용주가 받는 보수의 일반적 형태와 출처가 포함되어야 하며, 또한 CFP 자격자 및/또는 고용주가 다른 보수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 그러한 지급의 출처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되는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b. 고객과 CFP 자격자, CFP 자격자의 고용주 또는 계열사/제 3 자 간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에 대한 일반적 요약. 여기에는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나) CFP 자격자 또는 고용주가 고객과의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잠재력이 있는 가족관계, 계약관계 또는 대리관계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다;
 - c. 고객이 CFP 자격자의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결정하는 데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범위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CFP 자격자 또는 고용주에 관한 모든 정보;

- d. 고객이 관계의 범위와 성격을 정립하는 데 합리적으로 알고자 하는 모든 정보(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나 CFP 자격자의 전문 분야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및 ;
 - e. CFP 자격자의 연락처 정보 및(해당하는 경우) CFP 자격자 고용주의 연락처 정보. CFP 자격자는 상기 정보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지속적으로 고객에게 적시에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16. CFP 자격자는 고객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a. 고객이 CFP 자격자의 직계가족(immediate family)인 경우;
 - b. 고객이 대출업을 영위하는 기관이며, 차입이 CFP 자격자가 수행한 전문 서비스와 무관한 경우.
17. CFP 자격자는 고객에게 금전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a. 고객이 CFP 자격자의 직계가족인 경우;
 - b. CFP 자격자가 대출업을 영위하는 기관의 직원이며, 대여되는 금전이 CFP 자격자 개인의 자금이 아니라 해당 기관의 자금인 경우.
18. CFP 자격자는 적법한 법적 절차 또는 규제 요건에 대한 적절한 대응으로 요구되는 경우, 고용주 또는 파트너에 대한 의무 이행상 필요한 경우, 위법행위 혐의에 대한 방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민사 분쟁과 관련된 경우 또는 고객을 대신하여 전문 서비스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의 정보를 비밀로 취급하여야 한다.
19. CFP 자격자는 자신의 통제 하에 있는 고객 정보 및 재산의 보안을 보호하기 위하여(물리적 또는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의 보안을 포함한다) 신중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0. CFP 자격자는 전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신중한 전문적 판단을 행사하여야 한다.
21. CFP 자격자는 고객에게 제공되는 전문 서비스에 적용되는 모든 관련 법령 및 규제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22. 직원/대리인인 CFP 자격자는 고용주/본인의 적법한 목적 달성을 위해 헌신적으로 전문 서비스를 수행하되, FPSB 회원기관의 윤리강령에 따라야 한다.
23. CFP 자격자는 CFP 마크의 적절한 사용을 포함하여 FPSB 회원기관과 체결한 모든 약정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원기관의 상표 및 전문성 심사 절차.요건에 전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24. CFP 자격자는 CFP 마크 사용 권한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속적 전문성 개발 요건을 포함한 FPSB 회원기관의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25. CFP 자격자는 (회원기관이 정의하는) 범죄의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직무 관련 자격정지 또는 취소 처분이 있는 경우, 유죄판결·정지·취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FPSB 회원기관이 정한 기간 내에 이를 회원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6. CFP 자격자는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들), 실주소를 포함한 연락처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일로부터 FPSB 회원기관이 정한 기간 내에 회원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27. CFP 자격자는 자신의 성실성 또는 CFP 자격자로서의 적격성, CFP 마크 또는 재무설계 직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8. CFP 자격자는 적시에 충분히 검토된 방식으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9. 업무 범위에 부합하는 한, CFP 자격자는 고객에게 권고될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합리적인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CFP 자격자는 제 3 자가 수행한 조사에 대하여, 그 조사 품질에 의존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그 결과에 의존할 수 있다.
30. CFP 자격자는 고객 서비스의 일부에 대한 책임을 부하직원 또는 제 3 자에게 부여하는 경우, 그들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신중한 전문적 감독 또는 지도를 제공하여야 한다.
31. CFP 자격자는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능한 한 신속하게 또는 고객과의 약정에 명시된 기간에 따라 고객의 재산을 반환하여야 한다.
32. CFP 자격자와 고객은 CFP 자격자가 제공할 서비스에 대하여 상호 합의하여야 한다.
33. 서비스에 재무설계 또는 재무설계 프로세스의 중대한 요소가 포함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CFP 자격자는 다음 사항을 고객에게 서면으로 제공하고/또는 논의하여야 한다:
 - a. 고객의 목표·필요·우선순위를 정의하는 것, 적절한 자료의 수집·제공, 변경 없이 현재의 행동방향을 유지할 경우의 결과 검토, 권고 조치의 수립, 재무설계 권고의 실행에 관한 책임 및 재무설계 권고의 검토에 관한 책임 등과 관련하여 계약상 각 당사자의 의무와 책임;
 - b. 계약 조건에 따라 계약 당사자 또는 그 계열사가 받거나 받을 수 있는 보수(수수료), 고객 비용을 결정하는 요소 또는 조건, 의사결정이 CFP 자격자에게 어떤 이익이 되는지 및 CFP 자격자에게 귀속되는 상대적 이익;
 - c. CFP 자격자가 독점/자체 상품(proprietary products)을 사용할 조건;
 - d.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위하여 CFP 자격자가 다른 기관/전문가를 활용할 조건;
 - e. 관계 종료(해지) 절차; 및
 - f. CFP 자격자에 대한 고객의 청구 및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

34. 서비스에 재무설계 또는 재무설계 프로세스의 중대한 요소가 포함되는 경우, CFP 자격자 또는 CFP 자격자의 고용주는 재무설계 서비스에 관한 서면계약("계약서")을 체결하여야 한다. 계약서는 다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 a. 계약 당사자;
 - b. 계약일 및 계약기간;
 - c. 각 당사자가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방식과 조건; 및
 - d. 계약에 따라 제공될 서비스.
35. CFP 자격자는 고객이 정보에 근거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고객이 재무설계 권고사항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6. CFP 자격자는 고객과의 업무 범위에 관련되는 재무설계 실무기준을 숙지하고, 합리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37. CFP 자격자는 자신의 전문활동에서 재무설계사 윤리강령 및 전문적 책임규정(Financial Planner Code of Ethics and Professional Responsibility)을 숙지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이상)